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72 발의연월일: 2022. 11. 25.

발 의 자 : 이수진(비 · 강민정 · 김성환

김정호 · 노웅래 · 민형배

송옥주 · 오영환 · 우원식

윤미향 • 윤준병 • 이동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 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산업용 시설 및 상업용 시설 등이 침수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3항제8호).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8호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산업시설·상업시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 및 상업시설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
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u>.</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공공시설</u> 피해에 대한 복구	8. <u>공공시설·산업시설·상업시</u>
사업비 지원	<u>설</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